

-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
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18991호 2005.8.5)이 공포
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
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개정(안 제3조제2항)
(회기일수 1일 70,000원 ⇒ 100,000원)

3. 관련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(별표6)

4. 검토의견

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1999.12.31 개정 조정된 이후 5년간 동결되어
왔으나 그 동안 물가 변동 및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05. 8. 5 지방자치법 시행령
제15조 별표6호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공포 되었으므로
우리구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
티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2005. 8. 5